

■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의4] <신설 2023. 6. 7.>

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(제9조의8 관련)

1.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

구 분	시설의 종류
가. 기본시설	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중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
나. 숙박·편익시설	숙박시설[숲속의 집·트리하우스·일반야영장(야영데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자동차야영장 등]·임도·산책로·탐방로·등산로·야외탁자·모노레일·야외쉼터·대피소·주차장·방문자안내소·임산물판매장·매점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등
다. 위생시설	취사장·오물처리장·화장실·음수대·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
라. 교육시설	자연관찰원·전시관·목공예실·생태공예실·숲속교실·숲속수련장·교육자료관 및 세미나실 등
마. 체육시설	철봉·그네·족구장·민속씨름장·배드민턴장·게이트볼장·테니스장·어린이놀이터 및 물놀이장 등
바. 전기·통신 시설	전기시설·전화시설·인터넷중계기·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음향 시설 등
사. 안전시설	울타리·화재감시카메라·화재경보기·소화기·재해경보기·보안등·비상조명설비·비상조명기구·재해예방시설·사방댐 및 방송시설 등

2.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

구 분	설치기준
가. 일반기준	1)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며,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2)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의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할 것 3) 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으며, 산사태, 급경사지 붕괴, 토석류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4) 태풍, 홍수,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, 범람으로 고립 위험이 없는

	<p>곳에 설치할 것</p> <p>5) 구급차,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도로는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, 1차선 차로만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</p> <p>6) 전기시설의 경우 침수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하며, 보행로 상에 전선피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</p> <p>7) 숲경영체험림 시설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(숲경영체험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·순환로·산책로·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)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</p> <p>가) 숲경영체험림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</p> <p>나) 형질변경 면적의 합계가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</p> <p>8) 숲경영체험림에 설치되는 건축물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</p> <p>가) 숲경영체험림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</p> <p>나)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. 다만,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</p> <p>다) 건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일 것</p> <p>9)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 등에 적합할 것</p>
<p>나. 시 설별 설치 기준</p>	<p>1) 기본 시설</p> <p>가) 숲경영체험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이면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 승인 면적의 20% 이상일 것</p> <p>나) 숲경영체험 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해야 하며, 체험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출 것</p> <p>2) 숙박·편의 시설</p> <p>가)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</p> <p>나)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울폐도(鬱閉度: 숲이 우거진 정도) 및 차폐도(遮蔽度: 숲으로 둘러싸인 정도) 등을 유지할 것</p> <p>다) 일반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(텐트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)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, 텐트 간 이격 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</p> <p>라) 자동차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(차량을 주차하는 공간과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)당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,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</p> <p>마)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는 각각 1개소 이내로 설치할 것</p>

	바)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,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
3) 위생 시설	가)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설치할 것 나)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다)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라)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
4) 체육 시설	이용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
5) 안전 시설	가) 긴급한 재난·사고 시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 시설을 갖추는 것 나) 소화기를 배치할 것 다)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라) 비상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 조명설비 또는 비상 조명기구를 갖추는 것

비고

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